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농산물 학교급식 공동명의 대금정산 계좌 지분 관계 약정 체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일반농산물 공급업체 등에 대한 안정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대금 정산을 위해 우리공사(센터)와 농산물 납품업체의 공동명의 대금정산 전용 계좌 입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분 관계 약정을 체결코자 합니다.

1. 약정 주체 : 71개사

공급업체(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포함)				납품업체	공사(센터)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양곡	일반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11	6	9	20	24	1

2. 약정 내용 : 공동명의 계좌입금 금원에 대해 산지생산자단체 등과 납품업체 지분임을 명시(3자간 약정 체결)-[붙임] 참조

3. 약정 방법 : 계좌 입금 채권 금액에 대해 공사, 공급업체, 납품업체 3자간 약정 체결(공사와 전체 공급 및 납품 업체 공동으로 약정 체결)

붙 임 : 공동명의 대금정산 계좌 지분 관계 약정서(대금정산 계좌 내역 등 포함) 1부. 끝.

---

대리

**장훈**

팀장

**서경남**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

04/12

협조자 팀장

**이종욱**

시행 급식지원팀-1374 (2017.04.12) 접수 ()  
우 157-74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 [www.garak.co.kr](http://www.garak.co.kr)  
전화 02-2640-8058 전송 02-2640-8099 / [gnschang@garak.co.kr](mailto:gnschang@garak.co.kr) / 공개

## 공동명의 계좌 입금 금액에 대한 지분관계 약정서

서울특별시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제8조의 3(친환경유통센터) 등에 따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공급된 농산물 식재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금 정산을 위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대표자 사장 박현출, 대리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 이하 '유통센터'라 한다)와 유통센터가 지정한 농산물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라 한다. 명단은 별표 1과 같다) 및 친환경농산물(양곡 포함) 생산자단체, 일반농산물 공급업체, 농산 가공상품 등록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 명단은 별표 2와 같다)간에 운영하는 공동명의 대금정산 전용계좌 운영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유통센터'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유통 체계 관리자로서 농산물 납품업체와 공급업체간 안정적 대금정산을 위해 '납품업체'와 공동명의 대금정산 전용계좌(그 내역은 별표 3과 같다)를 개설하고 '유통센터', '납품업체', '공급업체' 간 공동명의 계좌 입금 금액에 대한 지분 관계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등)** ① 본 약정서의 약정 기간은 2017년 4월 약정 체결일로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약정 기간 중 공급업체가 신규 모집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가 동 약정서에 추가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납품업체의 신규 서명 날인은 기존 약정서로 같음) 기존 약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때 '유통센터'는 '공급업체'가 추가 서명 날인한 약정서를 납품업체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3조('납품업체'의 권리)** 공동명의 대금정산 전용계좌 입금 금원 중 '납품업체' 채권 금액은 '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수발주시스템상에서 '공급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공급한 급식재료 물품대금 전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한다.

**제4조('공급업체'의 권리)** 공동명의 대금정산 전용계좌 입금 금원 중 '공급업체'의 채권 금액은 '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수발주시스템상에서 '공급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공급한 급식재료 물품대금 전액으로 한다.

**제5조(대금정산 절차)** ① '납품업체'와 '공급업체'는 매월 8일(토요일·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까지 대금정산액을 확정하여 그 내역을 '유통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유통센터'는 제1항의 정산내역과 '공급업체'가 지정한 입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등록 도장을 날인한 대량이체입금의뢰서 등을 '납품업체'에게 배부한다.
- ③ 제2항과 관련 납품업체는 출금한 금액을 출금과 동시에 공급업체에게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을 유통센터에게 제출한다.

**제6조(대금정산 방법)** ① '납품업체'의 대금정산 및 출금은 대체거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현금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 ② '납품업체'와 '공급업체'는 대금정산 완료 즉시 거래 확인서를 '유통센터'에게 제출한다.

본 약정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날인하고 '유통센터', '납품업체', '공급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약정서 제2조 제2항 등과 관련, 법률자문 예정이며 자문 결과에 따라 추후 공급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납품업체 등의 약정서 신규 서명 날인이 가능할 수 있음